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동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6일
한국방재협회장

1. 신청인

법인명	(주)한국수안 (대표 이동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50111-*****
소재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30번길 51-5 (천천동) 1층

2. 기술명 : 모듈식 부품의 조립결합방식을 적용한 교각 지지기둥이 구비된 박스형 구조의 내부 이동 통로를 구비한 플라스틱 저류조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모듈화된 부품의 조립결합방식으로 시공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각지지 기둥을 비롯한 보강체 적용으로 우수한 강도를 가지며, 저류조 본체 내부에 관리자가 직접 진입하여 이동 및 내부확인이 가능한 통로를 구비하여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높인 플라스틱 저류조 및 그 시공방법

4. 기술범위

- 모듈화된 플라스틱 부품의 구조적 안정성을 가진 설계 기술과 조립 · 적층 시공을 통한 시공 편의성 · 안전성 확보 기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저류조 본체 내부의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 기술

5.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한 사항은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방재협회(02-6952-9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가. 이해관계인 의견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나. 이해관계인 서약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의 붙임1 서식)
- 다. 신청서 열람 요청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라. '가'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 자료

7. 제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02-6952-9388)

※ 이해관계인 의견 반려 사항

「재난안전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및 3항에 의거,

-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 인정되지 않음.
- 이해관계인의 기술이 타인의 기술로써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
- 기술 도용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 요청한 경우
-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